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11. 12. 7

발 의 자 : 운동현위원 외 1명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해 오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지급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내년도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월 2,104,000원에서 2,263,000원으로 함.(안 제3조제2항)

## 3. 관련법규

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

## 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## 5. 예산조치 : 2012년도 예산편성(안) 반영

## 6. 기타사항 :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[마포구의회정비심의위원회 2011-1(2011.10.31)호]

- 의정비 : 년 40,360,000원 ( 월정수당 : 년 27,160,000원, 의정활동비 : 년 13,200,000원 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 
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월 2,104,000원”을 “월 2,263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생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월 2,104,000원으로 한다.</p> <p>다만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월 2,263,000원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